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1가합5495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경운, 김윤석

피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이민호, 이현우
변 론 종 결 2023. 5. 4.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 1) 원고는 2016. 5. 20.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에게 보증금액을 '대출예정금액 160,000,000원의 90%'인 144,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7. 5. 19.로, 보증상대방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D종합금융센터장"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그리고 B는 2017. 5. 30. C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1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위 보증기한은 4차례에 걸쳐 2021. 5. 14.까지로 연장되었다.
- 2) 원고는 2018. 5. 16. B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5. 18. B에게 보증금액을 '대출예정금액 840,000,000원의 90%'인 756,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9. 5. 17.로, 보증상대방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역삼지점장"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그리고 B는 2018. 5. 18. E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8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위 보증기한은 2차례에 걸쳐 2021. 5. 14.까지로 연장되었다.
- 3) 원고는 2019. 9. 25. B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에게 보증금액을 '대출예정금액 500,000,000원의 100%'인 50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22. 9. 23.로, 보증상대방을 'E 안양지점장'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그리고 B는 2019. 9. 26. E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4) 원고가 B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제1 내지 3신용보증약정(이하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은 그 내용이 서로 동일한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증약정서

제4조 주채무 이행의무

B는 원고가 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제5조 사전구상

① B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는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B와 연대보증인은 이의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4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8. 원고가 이 약정에 의한 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B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보증한 주채무 또는 원고에 대한 상환채무와 관련한 담보 유무에 불구하고 원고가 보증채무이행 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원고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주채무의 면책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B와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② B와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1항과 제2항의 원고가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원고가 정한 율을 말합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등

1) C은 2021. 5. 1. 원고에게 'B가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E은 2021. 5. 10. 원고에게 'B가 대출금채무 원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21. 6. 18.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① C에게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원금 1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120,438원 합계 145,120,43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② E에게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원금 7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5,435,991원 합계 761,435,991원과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원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931,945원 합계 502,931,945원을 합산한 1,264,367,936원(= 761,435,991원 + 502,931,94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20. 6. 1.부로 원고가 제공하는 신용보증에 적용되는 손해금율을 연 8%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B로부터 2021. 6. 18.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1,245,200원, 2021. 7. 6.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9,085,499원 합계 10,330,699원을 회수하였고, 위 9,085,499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1. 6. 19.부터 위 2021. 7. 6.까지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5,844원(= 9,085,499원 × 8% × 18일/365일)이 발생하였다.

다. 근저당권의 설정 등

- 1) B는 2020. 12. 22.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F’이었으나 이후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20. 12. 23. 이 사건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B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 2)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 2021. 7. 15.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22. 7. 21. 위 임의경매절차의 매각기일에서 매각되었고, 2022. 9. 6.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898,889,56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 1)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의 C 및 E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 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서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B에 대하여 1,408,745,161원[= 잔존 대위변제금 1,399,157,675원{= 총 대위변제액 1,409,488,374원(= C에 대한 대위변제액 145,120,438원 + E에 대한 대위변제액 1,264,367,936원) - B로부터 회수한 10,330,699원} + 지연손해금 35,844원 +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발생한 추가보증료 중 미수금 1,425,200원 + 가압류 등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중 미수금 8,126,442원] 및 그 중 잔존 대위변제금 1,399,157,675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1.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진다. 그런데 B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중 1인에 불과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위 설정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피고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898,889,561원 상당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탁관)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B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기초로 제작한 물건을 H(이하 'H'라고 한다)에게 납품하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피고에 대한 물품공급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던 중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B가 이 사건 설정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는 점을 증명하지도 못하였는바, 위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원고의 채권액에 원고가 주장하는 ① 추가보증료 중 미수금 1,425,200원 및 ② 가압류 등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중 미수금 8,126,442원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082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설정계약 체결일인 2020. 12. 22. 당시에는 아직 대위변제로 인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B와 C, E 사이의 각 여신거래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B가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위 2020. 12. 22.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5. 1. 및 2021. 5. 10. B가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1. 6. 18.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 및 E에게 합계 1,409,488,374원을 대위변제하고 B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위와 같은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는바,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위 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의 주장이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① 추가보증료 중 미수금 1,425,200원이나 ② 가압류 등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중 미수금 8,126,442원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1,399,193,519원(= 잔존 대위변제금 1,399,157,675원 + 지연손해금 35,844원) 및 그 중 잔존 대위변제금 1,399,157,675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1.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다.

나. 이 사건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가)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설정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가) B는 2014. 6. 1. 피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기초로 제작한 물건을 H에게 납품하여 왔다. 그리고 B의 총 매출액 중 H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사업연도에 51.6%(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를 기록한 이래로 2015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에 이르기까지 매년 80%를 상회하였고, 최대 95.2%에 달하기도 하였다.1) 그렇다면 B의 입장에서 H는 회사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거래 상대방이고, H에 대한 안정적인 물건 납품의 전제가 되는 피고와의 거래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역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B에게 ① 2020. 11. 11. 공급가액 겸 외상미수금 1,520,287,653원을, ② 2020. 12. 9. 공급가액 겸 외상미수금 1,462,558,474원을, ③ 이 사건 설정계약 체결 직후인 2021. 1. 15. 공급가액 겸 외상미수금 748,723,892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그리고 H는 B에게 2020. 10. 16. 총액 미화 1,523,060달러(= 547,260달러 + 232,240달러 + 371,780달러 + 371,780달러), 2020. 11. 19. 총액 미화 1,524,680달러(= 655,300달러 + 150,340달러 + 359,520달러 + 359,520달러) 상당의 물건 제작을 각 발주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설정계약을 전후하여 피고와 B 및 H 상호간의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위 설정계약서 제2조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B의 피고에 대한 물품공급대금채무로 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위 설정계약 체결 직후인 2021. 1. 15. B에게 748,723,89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에 대한 물품공급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던 B가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H와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위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다)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설정계약 체결일인 2020. 12. 22. 당시 B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위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 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부동산의 2021. 7. 21. 기준 감정평가액이 5,294,133,400원으로 산정된 사실, B가 2021. 5. 31. 당시 기업은행에 대하여 대출채무 등 합계 4,304,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2021. 4. 22.부터 2021. 6. 30.까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5건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의 기업은행에 대한 위 4,304,000,000원의 채무 중 2021. 5. 31.로부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사이에 발생한 채무가 3,773,000,000원인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이 사건 설정계약

체결일인 2020. 12. 22. 당시 이미 피고가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액수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위 5건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시점이 모두 이 사건 설정계약 체결일인 2020. 12. 22. 이후인 반면, 위 가압류의 청구채권의 발생 시점이나 금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았는바, 위 가압류의 청구채권을 위 2020. 12. 22. 당시 이미 피고가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설정계약 체결 당시 B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위 설정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B가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우, 판사 이학영, 판사 서하나

[별지 1]

목 록

1. 경기도 김포시 J 대 8,437㎡
2. 경기도 김포시 K 도로 337㎡
3. 경기도 김포시 L 임야 29,305㎡
4. 경기도 김포시 M 임야 3,438㎡
5. 경기도 김포시 J, N, O에 있는 P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Q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동.식물관련시설

1층 1,183.91㎡

6. 경기도 김포시 R에 있는 S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T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66.94㎡

7. 경기도 김포시 R에 있는 U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T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38.5㎡

8. 경기도 김포시 R에 있는 V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T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34.96㎡

9. 경기도 김포시 R에 있는 W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T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16.79㎡

[별지 2]

목 록

피고가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탁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의
898,889,561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 끝.

1) 2014사업연도 51.6%(H에 대한 매출액 870,272,514원 / 총 매출액 1,685,283,791원),
2015사업연도 94.4%(H에 대한 매출액 9,110,566,156원 / 총 매출액 9,647,919,556원),
2016사업연도 85.1%(H에 대한 매출액 8,775,291,055원 / 총 매출액 10,303,262,489원),
2017사업연도 90.3%(H에 대한 매출액 10,947,737,541원 / 총 매출액 12,116,105,341원),
2018사업연도 95.2%(H에 대한 매출액 12,060,980,467원 / 총 매출액 12,662,102,877원),
2019사업연도 83.3%(H에 대한 매출액 14,012,106,810원 / 총 매출액 16,808,758,628원),
2020사업연도 93.3%(H에 대한 매출액 15,966,946,786원 / B의 총 매출액 17,102,286,786원).